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8도1415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1. 선고 2018노91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2.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 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 거나, 공범 간의 범죄 성립,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및 인과관계, 업무상횡 령죄의 성립,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해 살펴보더라도, 제1심 공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수단 및 방법, 범행 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의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즈 시	대버과	바사오

대법관	노정희	